

대구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19가합2114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배현탁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9. 8. 9.자 근저당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 8. 14. 접수 제8515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은 대구 수성구 E 일원의 'F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주체인 F정비사업조합의 시행업무를 대행(이하 D의 위 업무를 '이 사건 시행대행업무'라 한다)하는 법인이다.
- 2) 피고는 2015. 12. 31.경부터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C은 그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한편 C은 2016. 12. 1.경부터 2019. 3. 30.경까지 D에 고용되어 근무하기도 하였다.
- 3) C은 이 사건 시행대행업무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C 또는 피고 명의로 원고 또는 D에게 2017. 5.경부터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받는 등 상호 금전을 주고받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양도

- 1)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 7. 10. 접수 제6453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자였다.
- 2) C은 2019. 8. 9. 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 8. 14. 접수 제8515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및 D)와 피고(및 C) 사이의 관련 사건

- 1)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9. 7. 11. C을 상대로 대여금 약 8억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6807호)를 제기하였는데, 2021. 5. 20. '원고가 C에게 합계 8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C이 차용을 자인하는 8,20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5,106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의 선이자 또는 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C이 원고에게 반환할 대여금은 8,204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뿐이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쌍방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대구고등법원 2021나23569호)이다.
- 2) C은 2019. 10. 29. D을 상대로 대여금 각 1억 4,400만 원, 약 5억 1,122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3398호,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10608호)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3398호 사건은 2021. 5. 26. C의 청구가 전부 인정되었으나, D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1나314309호) 계속 중이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10608호 사건도 2021. 6. 4. C의 청구가 대부분 인정되었으나, D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1나23804호) 계속 중이다.

라. C에 대한 형사사건

C은 원고의 고소로 인하여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초경 원금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고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되었으나, 2021. 5. 4. ”고소인인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실제 운영자금 차입안건을 가결한 점, 거래처원장이나 회계장부에도 ’C 차입금’이란 내용이 있는 점, 원고는 C로부터 입금을 받기 전 자금사정이 힘들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고소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C이 차용증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3722호).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21노152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3,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8억 2,004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9. 7. 11.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C은 그 무렵 원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2019. 8. 9.자 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한편 피고는 C을 사내이사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내지 D은 이 사건 시행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피고 내지 C로부터 차용하여 온 점, ② 원고나 D이 피고 측에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대해 D과 피고의 사내이사 C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이나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는 피고나 C이 원고 측에게 대여해 준 원금이나 그 이자를 일부 변제하기 위해 지급된 것을 확인한 점, ③ 현재 관련 민사판결 1심에 의하면 C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합계 약 6억 5,000만 원 이상 인정되었고,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약 8,200만 원만 인정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에 대하여 8억 2,004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C에 대한 채권보다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더 크므로 채권금액만 보더라도 C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민석, 판사 이호선, 판사 정주희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영덕군

전 3005㎡

10분의 7 지분, 10분의 3 지분

2. 경상북도 영덕군

답 1369㎡

10분의 7 지분, 10분의 3 지분

3. 경상북도 영덕군

대 1435㎡

10분의 7 지분, 10분의 3 지분

4. 경상북도 영덕군

[도로명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

1층 다가구주택 254.08㎡

2층 다가구주택 200.68㎡

10분의 7 지분, 10분의 3 지분

5. 경상북도 영덕군

전 1159㎡

10분의 7 지분, 10분의 3 지분

6. 경상북도 영덕군

전 65㎡

10분의 7 지분, 10분의 3 지분

